

#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

김윤묵

## I. 개정이유

‘교통영향평가제도’를 ‘교통영향분석·개선대책제도’로 변경·개선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(법률 제8852호, 2008. 3. 28. 공포, 2009. 1. 1. 시행)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교통영향분석·개선대책의 대상사업 조정, 교통영향분석·개선대책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방법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, 교통수요관리활동 등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 II. 주요내용

### 1.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

#### 1)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

- (1) 교통영향분석·개선대책의 수립대상 사업과 최소기준면적 조정(안 제14조 및 별표 1)
- 1) 교통영향분석·개선대책의 수립대상 사업을 개발사업과 건축물로 나누고, 교통유발량이 적은 주유소, 충전소 등은 교통영향분석·개선대책의 수립대상사업에서 제외하며, 제2종 근린생활시설, 도매시설 등은 교통영향분석·개선대책의 대상이 되는 최소면적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.
- 2) 동일한 사업인 경우라도 사업지나 건축물의 위치가 교통혼잡도가 상

대적으로 낮은 교통권역에 위치하면 교통영향분석·개선대책을 수립해야하는 기준면적을 도시교통정비구역에 비해 1.5배로 완화함.

- (2) 교통영향분석·개선대책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방법 규정(안 제17조)
- 1) 법 제19조 제2항에서 위임한 교통영향분석·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.
  - 2) 승인관청 소속으로 교통영향분석·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교통영향분석·개선대책을 심의하되, 심의위원회의 구성원 수를 10인 이상 40인 이하로 하고, 매 심의회 개최시 소집되는 위원은 전체 위원 중에서 9인 이내로 하되, 추첨 등을 통해 무작위로 선정함.

## 2)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

- (1) 교통영향분석·개선대책의 수립에 관한 기초자료 연구·조사 방법 등 규정(안 제27조)
  - 1) 기초자료 연구·조사는 국토해양부장관과 시·도지사가 역할을 분담하여 정기조사(매 3년)와 수시조사로 나누어 시행하도록 함.
  - 2) 주요 교차로의 통행량, 교통유발원단위, 주차원단위 및 기존에 작성된 교통영향분석·개선대책(구, 교통영향평가서) 등을 대상으로 조사하되, 법 제9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교통조사 자료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보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.
  - 3) 국토해양부장관과 시·도지사간의 구체적인 업무분담을 위하여 필요할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과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.
- (2) 시행령 제42조의2 제2항에서 위임한 도시철도기술실무위원회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30조 내지 제32조)
  - 1) 도시철도기술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함.
  - 2) 도시철도기술실무위원회의 업무범위를 도시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시설의 표준규격, 성능시험 기준, 안전기준, 내구연한 및 정밀진단의 제정·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의 심의 등으로 함.
  - 3) 위원회는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등 위원회의 운영방법을 정함.
- (3) 교통수요관리활동에 사용하는 특별회계의 수입금 비율 규정(안 제26조)

- 1) 법 제49조 제3항 단서에서 위임한 특별회계의 수입금 비율을 '30% 이상'으로 정함

### III. 의견제출

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(안) 및 시행규칙(안)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교통복지과로 2008년 7월 22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ltm.go.kr/>) 법령자료-입법예고란을 참조하도록 되어 있다.

[별표 1]

교통영향분석·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의 범위 및 제출시기  
(제14조제3항관련)

1. 개발 사업

구분	수립대상사업의 범위	제출시기
(1) 도시의 개발	(가) 「도시개발법」 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- 심의대상 : 부지면적 10만 <sup>m</sup> 2 이상 (나)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조제2호 나목 및 라목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- 심의대상 : 부지면적 10만 <sup>m</sup> 2 이상 (다)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 시설 중 다음의 시설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 1) 도로 - 심의대상 : 총길이 5km 이상 신설노선 중 인터체인지·교차부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의 접속부 2) 유통업무설비 - 심의대상 : 건축연면적 1만5천 <sup>m</sup> 2 이상 또는 부지면적 5만5천 <sup>m</sup> 2 이상 3) 공원 - 심의대상 : 부지면적 30만 <sup>m</sup> 2 이상 4) 유원지 - 심의대상 : 부지면적 15만 <sup>m</sup> 2 이상	「도시개발법」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 인가 전,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인가의 고시 전 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

<표계속>

구분	수립대상사업의 범위	제출시기
	(마) 「주택법」 제16조에 따른 대지 조성사업 - 심의대상 : 부지면적 10만m <sup>2</sup> 이상	「주택법」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
	(바) 「택지개발촉진법」 제7조제9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「국민임대 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- 심의대상 : 부지면적 10만m <sup>2</sup> 이상	「택지개발촉진법」 제9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 또는 「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
	(사) 「유통단지개발 촉진법」 제2조 제4호에 따른 유통단지개발사업 - 심의대상 : 부지면적 5만m <sup>2</sup> 이상	「유통단지개발 촉진법」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
	(아) 「화물유통촉진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화물터미널의 설치 - 심의대상 : 부지면적 2만5천m <sup>2</sup> 이상	「화물유통촉진법」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 전
	(자)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호에 따른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- 심의대상 : 부지면적 10만m <sup>2</sup> 이상	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제1항에 따른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전
	(차)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- 심의대상 : 부지면적 10만m <sup>2</sup> 이상	「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 전

구분	대상사업의 범위	제출시기
(2)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	(가)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- 심의대상 : 부지면적 20만m <sup>2</sup> 이상 (나) 「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특구연구개발사업 - 심의대상 : 부지면적 20만m <sup>2</sup> 이상	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17조 내지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「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7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
(3) 에너지 개발	「전원개발촉진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(송전선로의 경우를 제외한다) - 심의대상 : 부지면적 15만m <sup>2</sup> 이상	「전원개발촉진법」 제5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
(4) 항만의 건설	「항만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건설 - 심의대상 : 연간하역능력 150만톤 이상	「항만법」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전. 다만, 「항만공사법」에 따른 항만공사가 시행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

〈표계속〉

구분	대상사업의 범위	제출시기
(5) 도로의 건설	<p>『도로법』 제11조에 따른 도로의 건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심의대상 : 총길이 5km 이상</li> <li>신설노선 중 인터체인지·분기점·교차부분 및 다른 간선도로와의 접속부</li> </ul>	<p>『도로법』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전</p>
(6) 철도의 건설	<p>(가) 『철도건설법』 제2조제1호 및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의 건설. 다만, 『철도사업법』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를 공장 안에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심의대상 : 정거장 1개소 이상을 포함하는 총길이 5km 이상</li> </ul> <p>(나) 『도시철도법』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건설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심의대상 : 정거장 1개소 이상을 포함하는 총길이 3km 이상</li> </ul>	<p>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에 따른 도시계획 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, 그 밖의 경우에는 『철도건설법』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</p> <p>『도시철도법』 제4조의3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전</p>
(7) 공항의 건설	<p>『항공법』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비행장 및 공항의 설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심의대상 : 연간 여객처리 능력 30명 이상</li> </ul>	<p>『항공법』 제75조에 따른 비행장의 설치 또는 허가 전, 같은 법 제95조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실시계획의 수립 전 또는 승인 전</p>
(8) 관광단지의 개발	<p>(가) 『관광진흥법』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심의대상 : 시설계획면적 5만<sup>2</sup>m 이상 또는 부지면적 50만<sup>2</sup>m 이상</li> </ul> <p>(나) 『온천법』 제2조에 따른 온천의 개발사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심의대상 : 부지면적 10만<sup>2</sup>m 이상</li> </ul>	<p>『관광진흥법』 제52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전</p> <p>『온천법』 제7조에 따른 온천개발 계획의 승인 전</p>
(9) 특정지역의 개발	<p>(가) 『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』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심의대상 : 부지면적 10만<sup>2</sup>m 이상</li> </ul> <p>(나) 『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』 제2조제5호에 따른 복합단지의 조성사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심의대상 : 부지면적 10만<sup>2</sup>m 이상</li> </ul> <p>(다) 『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등에 관한 특별법』 제16조에 따른 평택시개발사업 또는 동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국제화계획 지구개발사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심의대상 : 부지면적 10만<sup>2</sup>m 이상</li> </ul>	<p>『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』 제17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</p> <p>『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』 제36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</p> <p>『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에 관한 특별법』 제17조에 따른 평택시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전 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국제화계획지구 개발계획의 승인 전</p>

<표계속>

구분	대상사업의 범위	제출시기
(10) 체육 시설의 설치	(라) 「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 위한 연기·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- 심의대상 : 부지면적 10만 <sup>m<sup>2</sup></sup> 이상	「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 위한 연기·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」 제2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또는 같은 법 제53조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의 계획수립 전
	(마) 「기업도시개발특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- 심의대상 : 부지면적 10만 <sup>m<sup>2</sup></sup> 이상	「기업도시개발특별법」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
	(가) 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공사. 다만 골프장 설치공사의 경우에는 27홀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. - 심의대상 : 부지면적 15만 <sup>m<sup>2</sup></sup> 이상	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(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)
	(나) 「경륜·경정법」 제2조제1호·제2호에 따른 경륜 또는 경정 시설의 설치사업 - 심의대상 : 부지면적 15만 <sup>m<sup>2</sup></sup> 이상	「경륜·경정법」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전
	(다) 「한국마사회법」 제4조에 따른 경마장 - 심의대상 : 부지면적 15만 <sup>m<sup>2</sup></sup> 이상	「한국마사회법」 제4조에 따른 경마장 설치허가 전
(11) 민간 투자사업	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- 심의대상 : 해당 사업 또는 시설규모 이상	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

2. 건축물

(1) 단일용도의 건축물

주용도	세부용도	건축연면적(m <sup>2</sup> )	
		입법예고(안)	
		도시교통 정비지역	교통권역
(가) 공동주택	아파트	60,000 <sup>m<sup>2</sup></sup> 이상	90,000 <sup>m<sup>2</sup></sup> 이상
(나) 제1종 근린생활시설	의원, 한의원	25,000 <sup>m<sup>2</sup></sup> 이상	37,500 <sup>m<sup>2</sup></sup> 이상
	정수장, 양수장, 변전소(대피소, 무인변전소 제외)	37,000 <sup>m<sup>2</sup></sup> 이상	55,500 <sup>m<sup>2</sup></sup> 이상
	기타	12,000 <sup>m<sup>2</sup></sup> 이상	18,000 <sup>m<sup>2</sup></sup> 이상

<표계속>

주용도	세부용도	건축연면적(m <sup>2</sup> )	
		입법예고(안)	
		도시교통 정비지역	교통권역
(다) 제2종 근린생활시설		15,000m <sup>2</sup> 이상	22,500m <sup>2</sup> 이상
(라) 문화 및 집회시설	공연장(극장·영화관 등)	15,000m <sup>2</sup> 이상	22,500m <sup>2</sup> 이상
	집회장(예식장·공회당·회의장 ·마권장외발매소 등)	4,000m <sup>2</sup> 이상	6,000m <sup>2</sup> 이상
	관람장(경마장, 자동차경기장 등)	15,000m <sup>2</sup> 이상	22,500m <sup>2</sup> 이상
	전시장(박물관·미술관·과학관 ·기념관 등)	15,000m <sup>2</sup> 이상	22,500m <sup>2</sup> 이상
	동·식물원	부지면적 20,000m <sup>2</sup> 이상	부지면적 30,000m <sup>2</sup> 이상
(마) 종교시설	종교집회장(교회·성당·사찰·기도 원)	15,000m <sup>2</sup> 이상	22,500m <sup>2</sup> 이상
(바) 판매시설	도매시장, 상점	13,000m <sup>2</sup> 이상	19,500m <sup>2</sup> 이상
	할인점·전문점·백화점 ·쇼핑센터	6,000m <sup>2</sup> 이상	9,000m <sup>2</sup> 이상
(사) 운수시설	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, 철도시설, 공항시설,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, 집배송시설	11,000m <sup>2</sup> 이상	16,500m <sup>2</sup> 이상
(자) 교육연구 시설	대학, 대학교	100,000m <sup>2</sup> 이상	150,000m <sup>2</sup> 이상
	교육원, 직업훈련소, 학원, 연구소, 도서관	37,000m <sup>2</sup> 이상	55,500m <sup>2</sup> 이상
(차) 운동시설 (근린생활시설 에 해당하는 것 제외)	탁구장 등, 체육관, 운동장 (운동장 부속 건축물 포함)	10,000m <sup>2</sup> 이상	15,000m <sup>2</sup> 이상
(카) 업무시설	공공업무시설	7,000m <sup>2</sup> 이상	10,500m <sup>2</sup> 이상
	일반업무시설	25,000m <sup>2</sup> 이상	37,500m <sup>2</sup> 이상
(타) 숙박시설	호텔·여관·관광호텔 등 숙박시설	40,000m <sup>2</sup> 이상	60,000m <sup>2</sup> 이상
(파) 위락시설 (근린생활시설 과 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)	주점영업, 단란주점,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	11,000m <sup>2</sup> 이상	16,500m <sup>2</sup> 이상
	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, 무도장, 무도학원	6,000m <sup>2</sup> 이상	9,000m <sup>2</sup> 이상
(하) 공장		75,000m <sup>2</sup> 이상	112,500m <sup>2</sup> 이상

## 〈표계속〉

주용도	세부용도	건축연면적(m <sup>2</sup> )	
		입법예고(안)	
		도시교통 정비지역	교통권역
(거) 창고시설	창고	55,000m <sup>2</sup> 이상	82,500m <sup>2</sup> 이상
	하역장	부지면적 55,000m <sup>2</sup> 이상	부지면적 82,500m <sup>2</sup> 이상
(너) 자동차관련시설 (건설기계관련 시설 포함)	주차장, 검사장, 정비공장	13,000m <sup>2</sup> 이상	19,500m <sup>2</sup> 이상
	매매장	25,000m <sup>2</sup> 이상	37,500m <sup>2</sup> 이상
(더) 방송통신 시설(제1종 근린 생활시설에 해당 하는 것 제외)	방송국, 전신전화국, 촬영소 등, 통신용시설	43,000m <sup>2</sup> 이상	64,500m <sup>2</sup> 이상
(러) 묘지관련 시설	화장시설, 봉안당, 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등	부지면적 12,000m <sup>2</sup> 이상	부지면적 18,000m <sup>2</sup> 이상
	야외음악당, 야외극장	10,000m <sup>2</sup> 이상	15,000m <sup>2</sup> 이상
(머) 관광휴게 시설	어린이회관, 관망탑, 휴게소, 공원·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	30,000m <sup>2</sup> 이상	45,000m <sup>2</sup> 이상
(버) 장례식장		6,000m <sup>2</sup> 이상	9,000m <sup>2</sup> 이상



김윤묵